

[별표]

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·장비 요건  
(제2조 관련)

구 분	요 건
교수요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임강사(상근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은 관련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하며 전임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</li> </ul> </li> <li>* 전임강사 기준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기후·기후변화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</li> <li>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후·기후변화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기후·기후변화 관련 분야 실무경력(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이 2년 이상일 것</li> <li>다. 기후·기후변화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일 것</li> </ul> </li> </ul>
교육시설·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, 실습장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</li> <li>○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</li> <li>○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, 환기시설, 냉난방시설 및 소방법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갖출 것</li> </ul>

비고

1. 기후·기후변화 관련 분야: 기상학, 기후학, 대기과학, 대기환경학, 지리학, 지구과학교육, 과학교육, 지리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
2. 기후·기후변화 관련 분야 실무경력: 기상청, 지방자치단체, 국공립 연구기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(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)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후·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